#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8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이재정・김한규・강선우

강유정 · 임호선 · 위성락

박홍배 · 장철민 · 강훈식

복기왕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.

이로 인하여 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 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이 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 제7조제 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 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 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전단 중 "수급자"를 "제2조의2에 따라 수급자"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개별가구의 구성) ①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.
  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(동거인은 제외한다)
  - 2.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나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
    - 다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(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)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.

- 1.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. 이 경우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청년이 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아니한다.
  - 가.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(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
  - 나.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
- 3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
- 4.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
- 5.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
- 6.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 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 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이 확인한 사람

7.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확인한 사람

제8조의2제2항제6호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의 참여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이후 참여한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"개별가구"란 이 법에 따른	8
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	
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	
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	
<u>수급자</u>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	제2조의2에 따라 수급자
된 가구를 말한다. <u>이 경우</u>	
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	<u>제&gt;</u>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개별가구의 구성) ① 개
	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
	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.
	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
	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
	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
	등록표에 등재된 사람(동거인
	은 제외한다)
	2.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
	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	는 사람

- 가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나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

  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

   사람
- 다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(제1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 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. 1.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 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 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체류했던 사람. 이 경우 「청

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청년이 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인재양성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체류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.

- 가.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
   상이 되는 사람(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
   나.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
   상이 되는 수급자
- 3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 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
- 4.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
- 5.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사람
- 6.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 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

제8조의2(부양능력 등) ① (생략)

-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8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.
- 1. ~ 5. (생 략)
- 6.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기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

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
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
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
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
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
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
확인한 사람
7.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
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
달리한다고 시장・군수・구청
장이 확인한 사람
제8조의2(부양능력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<u></u>
1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시장·군수·

구청장이-

<u>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</u> <u>라 한다)이</u> 확인한 경우 7. · 8. (생 략) ③ (생 략)


7. · 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